

## 國立高雄大學法學院與成均館大學法科大學及所屬大學法學科 友好交流協議書

根據高雄大學和成均館大學法科大學簽訂的學術交流協定，為建立高雄大學法學院與成均館大學法科大學及所屬大學法學科（以下統稱為“成均館大學法科大學”）之間實質性的合作關係，特締結本協議書。

- 一、高雄大學法學院與成均館大學法科大學根據下列條件進行教師和研究人員的交流。
  - 1、互派教師以每次一人為原則。教師或研究人員的具體派遣期限由雙方協商確定。
  - 2、雙方互為對方的派遣教師提供研究室。
  - 3、雙方盡最大努力在學術研究、住宿等方面為對方的派遣教師或研究人員提供便利。
  
- 二、高雄大學法學院和成均館大學法科大學根據下列條件進行學生交換。
  - 1、交換學生的身份，在高雄大學稱之為“交換學生”，在成均館大學法科大學稱之為“交換留學生”。
  - 2、交換（留）學生由派遣大學根據原有程式，按照被派遣大學的標準予以推薦。被派遣大學根據既定的規則和程式接收交換（留）學生。
  - 3、交換期間原則上為一學年，根據具體情況，也可以學期為單位。
  - 4、免收交換（留）學生留學的全部學費。
  - 5、交換（留）學生在被派遣大學取得的學分根據有關學校的規定相互予以承認。
  - 6、交換（留）學生應遵守被派遣學校的各項規定。
  - 7、住宿費、旅費、醫療費和保險費由交換（留）學生自負。但可以通過各種獎學金制度的支援等予以沖抵。
  
- 三、高雄大學法學院與成均館大學法科大學定期交換學術資訊和資料，互贈法學圖書和學術刊物，互為對方學術圖書的出版等提供便利。
  
- 四、高雄大學法學院與成均館大學法科大學推進共同關心領域的聯合課題研究以及共同舉辦國際學術會議等，為逐步擴大雙方的交流而努力。
  
- 五、本協議書經雙方簽字後生效，在兩校學術交流協定有效期間內有效。本協議書的任何一方均可以對本協議書提出修訂提案。任何一方若要解除本協議，需提前六個月通知對方。
  
- 六、本協議書以中文和韓文各制定兩份，具有同等效力。

2008年 / 月 / 日

2008年 / 月 / 日

高雄大學

成均館大學校

法學院院長

法科大學長

林志明

李勝雨

##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 그 所屬 大學院 法學科와 高雄大學法學院 간의 友好交流協議書

성균관대학교와 고웅대학 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근거하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그 소속 대학원 법학과(이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통칭함)와 고웅대학법학원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협의를 맺는다.

1.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교수와 연구원의 교류를 실시한다.

(1) 파견교수는 1 회 1 인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나 연구원의 구체적인 파견기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쌍방은 상대방의 파견교수를 위하여 연구실을 제공한다.

(3) 쌍방은 상대방의 파견교수나 연구원을 위하여 학술연구, 숙소 등 면에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한다.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학생교환을 실시한다.

(1) 교환학생의 신분은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교환유학생'으로 하고, 고웅대학에서는 '교환학생'이라고 한다.

(2) 교환(유)학생은 파견대학교 본래의 절차와 책임 하에 피파견대학교의 기준에 맞추어 추천하며, 피파견대학교는 소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교환(유)학생을 받아들인다.

(3) 교환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학기 단위의 교환도 인정할 수 있다.

(4) 교환(유)학생의 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면제한다.

(5) 교환(유)학생이 피파견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기로 한다.

(6) 교환(유)학생은 피파견대학교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 규정에 따른다.

(7) 숙식비, 여비, 의료비·손해보험료는 교환(유)학생이 부담한다. 단, 각종장학금제도 등의 원조를 받아서 이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학술정보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법학도서와 학술간행물을 상호 증정하고, 서로 상대방의 학술도서출판 등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관심영역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추진 및 공동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등 점진적 교류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5. 본 협의는 쌍방의 서명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고, 양 대학의 학술교류협정이 효력을 지니는 기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양 대학 중의 어느 한쪽이 본 협의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또 6 개월 전의 예고로 본 협의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6. 본 협의의 원문은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각 2 부씩 작성하며, 양쪽 공히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한다.

2008년 1월 11일

성균관대학교

고웅대학

법과대학 학장

법학원 원장

李勝雨

박종민